#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49

발의연월일: 2020. 9. 23.

발 의 자:윤재갑·김민석·신정훈

아슈진비 · 위성곤 · 민형배

노웅래 · 김승남 · 이개호

이재정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마장 외의 장소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경마·말산업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.

또한 다중 운집 및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한 현행 마권 발매구조는 전염질환 전파에 매우 취약한 바,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 대면·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

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시장으로 유도하여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한편, 장외발매소이용자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로 흡수·대체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등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승마투표권의 정의에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제6호).
- 나.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1항제2호).
- 다. 마사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 발매 시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협의·조정 또는 권고를 받을 경우 마권 발매의 일시 중단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(안 제6조제 3항 신설).
- 라. 마사회는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(안 제17조의2 신설).

##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"표(票)"를 "표(票)(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는 경주를 시행하는 해당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매한 것으로 본다.
- 1. 경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서의 마권 발매
- 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
- ③ 마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마권 발매 시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·조정 또는 권고를 받을 경우 마권 발매의 일시 중단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건전운영위원회) ① 마사회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마권 발매에 대하여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건전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"승마투표권"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(勝馬)를 적중시켜 환 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 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·마번(馬番) 및 금액 등이 적힌 표(票)를 말 -----표(票)(전자적 형태 한다. 를 포함한다)----. 7. ~ 9. (생략) 7. ~ 9. (현행과 같음) 제6조(마권의 발매 등) ① 마사 제6조(마권의 발매 등) ① 마사 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다 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 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마권을 있다. 발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 호는 경주를 시행하는 해당 경 마장에서 마권을 발매한 것으 로 본다. 1. 경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 외발매소에서의 마권 발매 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

② (생 략) <신 설>

③ (생략)

<신 설>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마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마권 발매 시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17조제1항및 제2항에 따른 협의·조정 또는 권고를 받을 경우 마권 발매의 일시 중단 등의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 제17조의2(건전운영위원회) ①
  마사회는 제6조제1항제2호에
  따른 전자적 마권 발매에 대하
  여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
  한다.
  - ② 건전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 여야 한다.